

- 2021.10. : 수질보전종합대책 실시체계 착수
- 2023. 2. : 경남도 시행계획 변경 승인

5. 근거법률: 「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22조 제4항

6. 전문위원 검토요지

○ 의견청취 목적

-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, 마동지구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(변경)을 위해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되었음.

참고 1]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

제22조(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수립) ① ~ ② (생략)

-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계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 및 특별자치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- ④ 제3항에 따른 시·도지사의 의견에는 매립기본계획과 관련된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의견 및 해당 시·군·구에 설치된 지방의회의 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⑤ (생략)

○ 주요내용

- 현재 추진하고 있는 마동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방조제 내측에 조성된 담수호의 수질(등급 V등급)을 농업용수 목표등급(IV등급)으로 개선하기 위한 수질보전대책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대상사업 개요는 다음과 같음.

참고 2]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변경안

- (위 치) 경남 고성군 동해면 ~ 거류면 마동호 일원
- (매립면적) 318.ha(기본 매립규모 19.8ha 대비 증가면적)
- (사업비) 452억원(기획재정부 총사업비 심의)
- (사업기간) 2023~2027년
- (시행자)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

○ 종합검토 의견

- 본 안건은 농림축산식품부(시행자: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)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동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(총사업비 1,882억원, 2027년 준공 예정)과 관련하여 수질기준에 충족하는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수질대책 사업 추진이 필요하며, 그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변경 전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, 사업의 목적 및 공익성 등을 고려할 때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(변경)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- 다만,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과 수질기준 충족을 위해 추진 예정인 수질대책 사업의 세부내용 및 향후 관리계획 등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,
- 특히, 집행기관에서는 향후 인근 마을주민 및 환경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사업 설명회·홍보 등을 통해 주민 불편 및 민원사항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 및 사업시행자와의 협의 등 관련 업무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.

7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8. 토 론 : 없음.

9. 심사결과 : 2023. 9. 13. 찬성의견 채택